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88호
의결년월일	2001. 6. 15 (제87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6. 13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“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”하던 것을 “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”토록 2000. 7. 1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, 지난 제8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에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“제1차 정례회”에서 “제2차 정례회”로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

주요골자

○ 행정사무감사시기를 “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”에 하던 것을 “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”으로 함(안 제2조)

개정조례안

○ 별 칙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감사) ①(생략)	제2조(감사) 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	②.....제2차 정례회.....
③~⑤(생략)
	③~⑤(현행과 같음)